

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7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2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2018년 ‘서울특별시의회정비심의위원회’에서 결정한 ‘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회원의 의정비 지급기준’에 맞춰 2022년도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를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(‘22. 1. 13. 시행)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
- 나. ‘월정수당 지급기준표’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“4,008,550원”에서 “4,044,620원”으로 변경함([별표 2]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로 한다.

별표 2 월정수당의 지급액란 “4,008,550원”을 “4,044,620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,008,55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급액	월정수당	4,008,550원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월정수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,044,62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급액	월정수당	4,044,620원
구분	지급액								
월정수당	4,008,550원								
구분	지급액								
월정수당	4,044,620원								